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95 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이양수・박덕흠・정희용

이인선 • 이종욱 • 김선교

권영진 • 배준영 • 서천호
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모(母)가 하도록 규정하고,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헌법재판소도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한 바 있음.

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「민법」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,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 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(안제46조제2항 및 제57조).

주요내용

- 가. 「민법」 개정안에 따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제 2항제1호 및 제2호).
- 나. 「민법」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증한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거나,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6조제2항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민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709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부(生父)가 할 수 있다.

- 1. 「민법」 제847조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
- 2. 「민법」 제854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
- 3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그 자녀의 생부(生父)임을 입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「민법」 제84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
 - 나.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
 - 다. 모가 공적 서류·증명서·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

우

라. 모의 소재불명, 장기간의 해외체류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

제57조제1항 본문 중 "부"를 "부(父)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서류·증명서·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"를 "부(父)는 자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 단서 및 제2항에"를 "제2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로써 이 법 시행 이전에 제46조제2항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(생 략)	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	②
모가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</u>	
<u>설></u>	각 호의 경우에는 생부(生父)가
	<u>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1. 「민법」 제847조제2항에 따</u>
	라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
	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<u><신 설></u>	<u>2. 「민법」 제854조의2제2항에</u>
	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
	<u>부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</u>
<u><신 설></u>	3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
	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
	법에 따른 검사 결과 그 자녀
	의 생부(生父)임을 입증한 자
	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모의
	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
	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<u>가. 「민법」 제844조제4항에</u>
	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
	제3항까지의 추정이 미치

③ • ④ (생 략)
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전한 인지) ① 부가 혼인 외의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인지의 효력이 있다. 다만,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

지 아니하는 경우

- 나.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
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
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
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
 다. 모가 공적 서류・증명서
 ・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
 될 수 없는 경우
- 라. 모의 소재불명, 장기간의 해외체류 또는 모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 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 가 있는 경우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भ <u>ी</u> 573	조(친생	가	출생의	신고에	의
한	인지)	1	부(父)		
				. <u><단서</u>	삭
제	>				

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 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. ② 모의 성명・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· 증명서 · 장부 등에 의하 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, 국 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④·⑤ (생 략)

② <u>부(父)는 자기의</u>
<u>.</u>
 ③ <u>제2항나에</u>
 ③ <u>제2항에</u>
 ③ <u>제2항·에</u>
 ③ <u>제2항에</u>
 ③ <u>제2항에</u>
 ③ <u>제2항에</u>
 ③ <u>제2항에</u>